정직처분취소

[서울중앙지방법원, 2022로40, 2022. 5. 3.]

[전문]

【원고(항소인)】

워고

【피고(피항소인)】

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

【제1심 판결】

수원지방법원 2018. 2. 7.선고 2016구합64587 판결

【변론종결】

2018. 11. 14.

【판결선고】

2019. 1. 9.

【주 문】

- 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이 유】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5. 11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.

[이 유]

- 1. 제1심 판결의 인용
 -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,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- 제5쪽 제12행의 '2015. 12. 26.'을 '2015. 11. 26.'로 고쳐 쓴다.
- 제6쪽 제1행의 '첩보보고서'를 '첩보보고서'로 고쳐 쓴다.
- 제7쪽 제16행의 '제59호증' 뒤에 '을 제65호증'을 추가한다.
- 제8쪽 제18행의 '21호증' 뒤에 '제66호증'을 추가한다.
- 제10쪽 제1행의 '제3호'를 '제2호'로 고쳐 쓴다.
- 제16쪽 관계법령의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(2017. 7. 26.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5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)

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- 2.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- 3.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
- 4.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
- 5.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6.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, 주기 또는 기간
- 7.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
- 8.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

2. 추가 판단

원고는, 시흥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(2017. 7. 26.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조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, 피고가 이와 같이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CCTV 영상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징계사유를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흥경찰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(2015. 9. 1. 이후 시행)은 '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'에서 '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, 주차장 내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'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시흥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가 원고에 대 한 근무대만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은 이 사건 CCTV 영상을 수 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. 그러나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(대법원 2016. 7. 1.자 2014마2239 결정 참조.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두20882 판결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), 공공감 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므 로, 위 청문감사 담당자가 원고의 근무태만을 인정할 만한 첩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을 토대로, 원고의 근무태만 인정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정도 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목적 외의 사용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 그리고 비록 시흥경찰서 B파출소가 위 청문감사 담당자에게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기록 •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 고 볼 수는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배광국(재판장) 김종기 송혜정